

1

서울시 · 강북 노동자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 위탁 운영 현황

○ 추진근거

- 근로복지기본법 제29조(근로복지시설의 운영위탁)
- 서울특별시 노동자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관리운영의 위탁)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2조(재계약)

○ 위탁사업명 : 노동자복지관 운영

복지관명	소재지	규모	수탁기관	위탁사무	개관일
서울시 노동자복지관	영등포구 국회대로 44길 10 (영등포동 7가 57번지)	3,768.24㎡ (지하1층, 지상6층)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서울지역본부	노동자권익보호증진 및 복지관 유지관리	'92.11.3
강북 노동자복지관	은평구 통일로 684 (녹번동 5번지)	1,857.15㎡ (지상 3층)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서울본부	노동자권익보호증진 및 복지관 유지관리	'02.3.27

○ 위탁기간 : 2017. 9. 25. ~ 2020. 9. 24.(3년)

○ 3년간 운영성과

구 분	서울시 노동자복지관	구 분	강북 노동자복지관
노동법률상담	2,975명 상담	노동법률 상담	13,616명 상담
테마별 노동법 강좌	90회 2,283명 교육	법률지원	1,328명 법률지원
현장방문교육	140회 7,963명 교육	노동법 교육	32회 4,223명 교육
취약지구 파견무료법률 상담	396회 4,406명 상담	청년학생 노동인권교육	145회 3,570명 교육
노동상담사례집	연도별 450권 발간		
기타	5.1 노동절, 노사정 워크숍, 노동조합 자원봉사 활동 지원 등	기타	각종 행사지원(5.1 노동절, 최저임금 노동자 생활임금 확보 및 권리찾기 캠페인 등), 중소기업사업장 생활실태 조사 등

□ 추진경과

- '20. 4.20. 노동자복지관 민간위탁 재계약 추진계획 수립
- '20. 5. 8.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심의(조건부 적정)
 - '21년 특화프로그램 사업비에 대한 세부 산출내역서 보완·제출
 - 차기('23.9.25.~'26.9.24.) 민간위탁 추진 시 공개모집 전환
- '20. 8. 5. 민간위탁 재계약 적격자심의위원회 심의(적격)

□ 재계약 사유

- 노동단체 대표성과 오랜 기간 축적된 운영 경험이 있는 전문기관과의 재계약을 통해 위탁사무의 연속성·효율성 확보 등 안정적 추진 필요
- 노동단체 네트워크를 통한 일반 노동자 대상 서비스 확대 등 노동자복지관 운영 활성화 도모
- ※ 다만, '20.5.8.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23년 공개모집 시행

□ ' 20년 민간위탁(재계약) 계획

- 위탁사무의 범위
 - 노동자 권익보호 증진 및 복지관 유지관리
- 위탁기간 : 2020. 9. 25. ~ 2023. 9. 24.(3년)
- 수탁기관 및 위탁금액

위탁시설	소재지	수탁기관	위탁금액
서울특별시 노동자복지관	영등포구 국회대로44길 10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서울지역본부	시설유지보수비
서울특별시 강북노동자복지관	은평구 통일로 684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서울본부	90백만원 (관리비)